

제9장 디지털 무역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한다.

적용대상인이란 제8.1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 2}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고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²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또는 암호기법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고 그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학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개방형 데이터란 자유로운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에 필요한 기술적·법적 특성을 갖추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에만 관련된다.

개인 데이터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또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9.2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WTO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추가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9.3조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제9.15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서비스 무역) 및 그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포함)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4. 제9.5조, 제9.13조 및 제9.14조는 당사국의 조치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8장(서비스 무역)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8.6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만들어진 당사국의 약속에 명시되거나 당사국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모든 제한 및 조건, 또는

나. 제8장(서비스 무역)의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제9.4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9.5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³
2. 제1항은 제10장(지식재산권)의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제1항은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³ 제9.5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로 한정되며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9.6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9.7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9.8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 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나.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 다.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가호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2.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국은 인이 단일접수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무역행정문서 및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단일창구와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제3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제4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가능한 한 서로 호환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하여 노력한다.

6. 종이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제9.9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할 때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⁴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제9.10조

개인 데이터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소비자 보호법 또는 규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⁵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 위반으로부터 디지털 무역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이용자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제9.11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디지털 무역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나. 법적·규제적 집행 활동상의 필요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법을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 다. 자신이 선택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제9.12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전자 메일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13조

정보의 국경 간 흐름⁶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⁶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1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⁷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⁷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15조
정부 데이터 공개

1. 양 당사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정보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그 정보가 개방형 데이터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16조
디지털 정부

1. 양 당사국은 기술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정부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자국 시민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운영 및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접근성, 투명성 및 책임성에 중점을 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절차를 채택한다.
 - 나. 디지털 의제 문제에 대하여 범분야적·범정부적 조정과 협력을 증진한다.
 - 다. 디지털 포용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 절차, 서비스 및 정책을 형성한다.
 - 라. 정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과 공공 디지털 조력자를 제공한

다.

- 마. 재난 및 위기를 예측하여 역량 구축을 위하여 신생 기술을 활용하고 선제적 대응을 촉진한다.
- 바. 공공 정책의 계획, 전달 및 점검에 정부 데이터를 적용하고, 데이터의 신뢰할 만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범과 윤리적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정부 데이터로부터 공공 가치를 창출한다.
- 사.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 데이터와 정책 수립 절차(알고리즘 포함)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 아. 일반 대중과 정부 인력 모두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3. 디지털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 당사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정부 및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디지털 정부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한다.
- 나. 디지털 정부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달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그리고
- 다. 공무원의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디지털 정부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 또는 훈련을 제공한다.

제9.17조

전자송장

-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

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두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국제 체계를 포함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고 또는 촉진한다.

나.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존립을 장려한다.

다.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그리고

라.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국제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한다.

제9.18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지급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증진, 그리고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국의 법과 규정을 공개한다.

나. 전자지급에 관한 규제 승인 또는 면허 승인에 관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완료한다.

다.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에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라.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채택하거나 활용한다.

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바.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시의적절하게 촉진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제9.19조 디지털 신원

1. 자연인 또는 기업을 위하여 디지털 신원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이 디지털 무역의 연계성과 추가적인 성장을 증진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기술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각국의 디지털 신원 체제 간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추구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 및 공통 표준의 개발
- 나. 각 당사국의 법 체계에 따른 디지털 신원에 대한 유사한 보호, 또는 자율적으로 또는 합의로 부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인정의 개발
- 다. 디지털 신원 체제에 대한 국제적 체계의 개발 지원, 그리고
-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 구현 및 보안 표준, 그리고 디지털 신원 사용의 증진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9.20조 협력

양 당사국의 경제에 대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관련된 법, 규정 및 그 이행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제적 사안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 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

- 나. 개인 데이터 보호
- 다. 디지털 무역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와 제재의 준수
- 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마. 전자인증
- 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지식재산 우려사항
- 사. 디지털 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도전과제
- 아. 디지털 정부
- 자. 정부 데이터 공개,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9.21조
사이버보안

양 당사국은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의 적절한 권한 있는 당국의 역량 구축
- 나.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하여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및 추가 협력 강화,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의 적발 및 경감에 대한 협력

제9.22조

핀테크 협력

양 당사국은 양국의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 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 나. 각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의 양 당사국 간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 협력을 장려한다.

제9.23조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러한 체계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3.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관련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증진한다.

- 나. 그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한다. 그리고
- 다.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의 증진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한다.